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사전안내엽서, 기간경과안내엽서, 검사명령서, 과태료 사전통지서, 과태료 고지서, 독촉고지서, 압류 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, 수취인불명,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19. 9. 3. ~ 2019. 9. 17. (15일간)

2. 공고대상 : 320건(붙임내역 참조)

3. 공고내용

- 가. 납부의무자께서는 공고기한 내 충주시청 교통과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,
- 나.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초 3%의 가산금과 매월 1.2%(60회)의 증가산금이 부과되며
- 다. 지방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 조치가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아래의 경우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(3급이상), 미성년자의 경우 의견진술기간 내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단) 과태료 체납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

4. 문 의 처 : 충주시청 경제건설국 교통과 (043)850-6344

2019. 9. 3.

충 주 시 장

